

## 보도자료

2014년 3월 18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윤응현 사무관(☎2110-1527) [yunwh@kcc.go.kr](mailto:yunwh@kcc.go.kr)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기민 주무관(☎2110-1528) [minkim@kcc.go.kr](mailto:minkim@kcc.go.kr)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설명회와 기술지원 접수 병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19일(수)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그동안 수집해 온 주민번호를 올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2.8.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수집한 주민번호는 '14.8.17일까지 파기해야 함(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정책 설명회에서는 방통위와 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DB파기' 기술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방통위와 KISA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하여 무료컨설팅을 실시하고,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번호 DB파기' 기술지원을 중점 실시중

※ 주민번호 삭제 상담창구(118→(상세)405-5250~1, ssnc@kisa.or.kr, i-privacy.kr)

첫 번째 발표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①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②동의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에서는 개인정보 보관의 최소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IT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서의 '정보통신망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자리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모든 기업들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하여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첨부 : 1. 제 1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계획  
2.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기술 지원계획  
3.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

## 14년, 1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계획

◇ (목적)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산·학·연 및 시민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4. 3. 19 (수) 10:00~17:40/KISA 대동청사 14F 강당
- (주최) 방송통신위원회(KCC)
-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참석 대상) 인터넷기업협회 등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협회),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200여명

###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0:00 ~ 10:10	[ <b>개회 및 인사말</b>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10:10 ~ 11:10	① 「 <b>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가이드라인(안)</b> 」 - (토론)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1:20 ~ 12:00	② <b>주민번호 파기 정책 설명 및 기술지원 신청 접수</b> - (참석)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협회), 중소기업자 등
13:30 ~ 14:00	③ <b>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개인정보 암호화 강화 정책</b> - (참석)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4:10~15:50	④ <b>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 방향</b> - (토론)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6:00~17:40	⑤ 「 <b>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b> 」 - (토론)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7:40	[ <b>폐회</b> ]

## '14년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기술 지원계획

### □ 배 경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2.8.18일부터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수집 주민번호는 '14.8.17일까지 파기해야 함



### □ 14년 추진계획

- (기술지원) 중소·영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DB 파기 기술지원 실시
  - (수집창 삭제) 주민번호 수집도구인 수집창 삭제 기술지원 실시
  - (DB 파기)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서비스 운용에 차질 없도록 주민번호 DB 파기 기술지원 실시

#### < 기술지원 신청방법 >

- (대상) ① 정보통신망법 대상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 ②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③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 (기간) 현재 ~ '14.11월

○ (지원내용) ①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 웹사이트 수정, ② DB 내 주민번호 파기 등

○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

○ **(DB파기 매뉴얼 배포)** 국내 전문가들이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 유형별 DB파기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배포

- 웹사이트 DB내 주민번호 저장여부를 검색하는 솔루션 개발하여 파기지원에 활용하고 사업자에게 보급

○ **(인터넷 클린센터)**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와 DB 파기 등과 관련한 법령·제도 안내, 주민번호 수집창 및 DB 삭제 등 컨설팅 제공

- 2012년부터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지원 안내 등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부터는 DB 파기 지원 안내 등 병행

※주민번호 삭제 상담창구(118→(상세)405-5250~1, ssnc@kisa.or.kr, i-privacy.kr)

○ **(주민번호클린협의회 구성)**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대응('04.2월~)

- 방통위 행사,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주관 행사 등과 연계하여 주민번호 정책 순회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

## 〈 기본 방향 〉

- ①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②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③ 동의서 양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 가이드라인은 법집행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점검항목에 반영할 예정

###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 (필수항목)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
  - 공통 필수항목은 이름, 연락처 등으로 한정
  - 서비스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여 구체화 추진 예정
- (선택항목)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기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면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함
  -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 빨간색 표시 등”으로 표시하여 알리도록 함
  - ※ (예)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우편으로 맞춤형 광고 정보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항목인 “주소” 수집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
- (필요한 시점에 수집) 이용자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미리” 동의를 받는 관행을 개선
  - ※ 이용자가 사전에 수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경제적·기술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미리” 동의 받을 수 있음

## 2. 단계별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9조)

- (수집 단계) 목적과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파기 사유 (목적·보유기간 종료, 이용자 파기 요청)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는 “지체없이” 파기
  -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함
    - ※ (예시) 인터넷 이용시 연령확인(14세 미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않도록 함
  - 이통사 등 영업점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본사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 강화
    - ※ (예) 영업점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자기기에 입력하면, 본사에 직접 전송되고 영업점에는 저장되지 않음
- (보유 단계) 파기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강화
  - (1단계)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와 차단된 별도 DB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DB에 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함(현행 3년이나 단축 추진 중)
    - ※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외부 영업목적(텔레마케팅 등)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2단계) DB서버에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
    - ※ 암호화 대상 확대 : (현행)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 (추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제3자 제공 단계) 기업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비스 관련으로 제공시에는 파기 여부를 확인
  - ※ 제3자 제공 각 단계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법률 개정 시 반영 추진
- (1단계)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제3자에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2단계) 기업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업’과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파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파기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에게 파기 요청하면 ‘제3자’에게 전달하고 파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3단계)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 (예)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 설정, 암호화 보관 여부 등) 이행 여부 확인 등
- (파기 단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선택항목 각각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다만, 이용자가 파기를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
  - ※ (예) 인터넷 “회원가입” 메뉴와 함께 “동의철회(파기요청)” 메뉴를 마련하고 선택항목에 대한 개별적 파기 요청이 가능하도록 구성

### 3.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 중요한 내용(법정 고지사항)은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 ※ 특히, 수집하는 항목 중 민감정보, 보유기간,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강조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은 별도 페이지로 표시) 수집·이용(필수/선택), 제3자 제공(선택), 취급위탁(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함
- (동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 개인정보 수집→저장→제공→파기 흐름을 이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제공
  -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하여 동의 받도록 함
    - ※ 중요한 내용(법정 고지사항) : ① 수집·이용 동의의 경우 “목적, 항목, 보유기간”, ② 제3자 제공의 경우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 “잘된 예”와 “잘못된 예”에 대한 사례 제시를 통해 기업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